

■ 논 단

한국의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 은 정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회사소송을 중심으로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법원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소송 중심으로 그 도입례를 제시한다.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ESG의 구체적 실현으로 주주,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주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과 회사법이 중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및 회사소송을 포함한 상사소송 도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간된 국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결과, 국내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상사소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사소송의 통계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에 포함되어 집계는 되고 있었지만, 상사비송사건의 경우만 연간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주축으로 직접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제상사법원을 선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선정하고 해당국들의 상사법원 설치 실태를 조사한 뒤, 설립·운영의 과정과 운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한다. 아울러, 한국의 상사소송상의 인력부족, 전문성 부재, 상사법리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당위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상사법원 도입, 상사법원, 상사법원의 전문화, 상법, 국제상사법원

* 본 논문은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입니다

〈目 次〉

I. 서 론	IV. 상사법원 도입 방안 및 고려사항
II. 상사소송 개관	1. 우리나라 회사소송제도의 문제점
1. 상사소송 개념	2.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을 통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
2. 상사소송 종류와 특징	3.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 혁신
3. 국내법상의 상사소송 관련 규정 개관	4. 구체적 사전 조사와 설립 근거 마련
III. 해외 사례	V. 결 론
1. 미국	
2. 영국	
3. 네덜란드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회사소송을 중심으로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사소송은 상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회사소송은 통상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유형을 일컫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 회사등 관계소송등에 관한 내용 및 회사관계소송 판례(2001.9.24. 2004다28047, 2010.12.23. 2010다58889)의 사용례에 따른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법원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소송 중심으로 그 도입례를 제시한다.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ESG의 구체적 실현으로 주주,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주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과 회사법이 중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및 회사소송을 포함한 상사소송 도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²⁾ 특히,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간된 국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결과, 국내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었다. 상사소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사소송의 통계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에 포함되어

1) 본 연구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상의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원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내용은 논외로 한다.

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2012, 1면.

집계는 되고 있었지만, 상사비송사건의 경우만 연간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헌조사 방법을 주축으로 직접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상사법원을 선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선정하고 해당국들의 상사법원 설치 실태를 조사한 뒤, 설립·운영의 과정과 운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한다. 아울러, 한국의 상사소송상의 인력부족, 전문성 부재, 상사법리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당위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상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상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며,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 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회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회사소송의 경우, 다수의 당사 실행법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절차법에서 제소시간, 당사자적격, 전속관할과 필요적 이송, 변론의 필요적 병합, 담보제공명령, 청구인용판결의 판결효, 판결의 소급효, 패소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등 다수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석상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³⁾ 하지만,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소송의 절차, 법리의 구성, 실체적 권리관계의 복잡성 등에서 법리구조 체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원은 민사와 상사소송을 동시에 담당하므로, 첫째, 소송 누적으로 인한 지연, 둘째, 높은 비용 및 일관성 없는 사건 관리 등 기존 소송절차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실제 회사장부 관독의 어려움, 회사조직의 이해에 대한 부재, 사건의 긴급성에 대한 이해 부족,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 실무활동에 대한 이해 부재, 다각화 되어가는 회사구조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법리해석 문제점 등으로 판결을 지적하는 논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사소송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소송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사법원 도입과 관련한 법적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기존의 소송법리·회사법리·국제적 이슈나 동향을 반영함은 물론, 국내 상사소송의 특성 및 당사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상계보고서, 2면.

4) 코어비트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2009년 제3자 유상증자배정을 통해 10.11%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어 사외이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고, 지배주주로서(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6년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6년 3월 30일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기각되었고, 최종 패소하였다. 코어비트 사건은 사법부의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 사외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II. 상사소송 개관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데,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조속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다.⁵⁾ 이러한 특성 탓에, 회사소송(상사소송)은 민법과는 다른 전문성과 판결의 긴급성을 요한다. 또한, 상법은 회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상법에서 규정된 소송은 일반적으로 회사법상의 소라고 한다.⁶⁾ 회사의 법률관계와 관련한 분쟁으로는 회사법상의 소 이외에 회사법상의 권리에 근거한 소송이 있다. 이러한 소송을 일괄하여 널리 회사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1. 상사소송 개념

본 연구에서 상사소송은 회사소송만을 고려하는데, 회사소송은 상법 회사편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유형을 말한다. 회사소송은 통상의 넓은 의미로, 회사가 소송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회사법)상 문제가 쟁점인 소송을 말하며,⁸⁾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범위로 사용하기로 한다. 회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리가 적용된다. 회사소송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법률문제가 쟁점인 소송을 의미하는 강학상의 용어이다.⁹⁾ 좁은 의미의 회사소송은 회사법상 법률문제가 쟁점인 소송 중에서도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말한다.¹⁰⁾

2. 상사소송 종류와 특칙

1) 상사소송의 종류

상법상 특별히 규정하는 회사법상의 소는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은 설립하자에 관한 소송, 회사 해산을 구하는 소송, 합병무효의 소 등이 있다.¹¹⁾ 인적회사에서 인정되는 소송, 물적회사에서 인정되는 소송으로는 업무집행

5)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20, 70면.

6) 상계서.

7) 상계서.

8)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344면.

9)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4, 3면.

10) 상계서.

1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계서.

사원의 권한상실 선고를 구하는 소송과 사원의 제명을 구하는 소송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인적회사적 성격을 겸한 물적회사인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된다.¹²⁾ 물적회사에서 인정되는 소송은 실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송이지만,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신주발행과 감자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 채권자가 위법배당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인정된다. 주식회사에 특유한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관해서는 따로 무효를 구하는 소가 인정된다.¹³⁾

2) 상사소송 절차상의 특칙

회사법상의 소는 형성의 소가 주를 이룬다.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제소기간에 대한 제약을 두고있으며, 소의 대부분 당해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된다든지(「상법」 제186조), 회사법상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대부분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상법」 제187조) 하는 점 등은 상사소송의 특칙 중 하나이다. 또한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회사의 법률관계를 확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 승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도록 하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급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190조). 회사법상의 소는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주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일각, 화해 등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상법」 제403조제6항).

3) 상사중재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두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량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¹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행하는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제1호). 정부는 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

12) 상계서.

13) 상계서.

14)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kcab.jsp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1일).

·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40조).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상사중재업무절차는 중재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정한 중재규칙(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¹⁵⁾ 중재제도는 소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 이하 ADR이라고 함)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주된 효용성은 자주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법관 이외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중재인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하여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이 국내 법원에 의한 판결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점, 절차의 비공개로 인하여 비밀유지 및 신용실추의 우려가 적다는 점 및 중재판정이 단심제로 그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확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종국적인 분쟁해결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¹⁶⁾¹⁷⁾ 2020년 국내 상사중재사건 건수는 건설(34.6%), 정보통신(11.4%), 무역(11.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전년과 대비하여 건설(23.9% 증가), M&A(Mergers and Acquisitions) 합작투자(37.5% 증가), 금융(30% 증가) 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⁸⁾

4) 비송사건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소송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쟁송성을 본질로 한다.¹⁹⁾ 이러한 쟁송성이 희박하여 성질상으로 행정소송에 가깝지만, 법원이 사인 간의 생활 관계에 후견자적 입장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비송사건에서 회사는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건본이라고 부른다.²⁰⁾ 판례는 이를 절충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비송사건으로 보고, 명문의

15) 이완근, 상사중재비용 회수와 그 문제점, 동아법학, 2012, 754면.

16) 남진권 외 7,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대한상사중재원, 2009, 388면, 상계논문 재인용, 754면.

17) 상사중재규칙 등에 우리나라 상사중재 관련 규정이 상사중재 비의 산정과 그 회수 방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변호사비용을 제외하여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에 비하여 신청이 인용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 나아가 상사중재판정의 실무가 비용 회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상사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주문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 당사자가 실제로 비용을 회수에 곤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비용 회수 절차에 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실무의 현명한 운용을,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이완근, 상계논문, 757면).

18) 대한상사중재원, 2020년 클레임 통계, 2020.

19) 임재연, 회사소송, 전거서, 55면.

20) 상계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하며,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절차 간의 간이 및 신속이 요구되는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²¹⁾ 우리나라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접수되고 처리되는 사건이며, 상업등기 사건은 제외된다. 2020년도 접수한 민사비송사건은 277,857건으로(도산사건 제외) 이는 전체 민사사건의 5.8%, 민사본안 외 사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²²⁾

3. 국내법상의 상사소송 관련 규정 개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서는 회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표 1)과 (표 2) 정리를 통하여 상법상의 회사소송 규정과 자본시장법상의 회사소송 규정을 개관한다.

1) 「상법」²³⁾

[표1] 「상법」 회사소송 규정

소송내용	상법 조문
회사설립 관련 소송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주식과 주주 관련 소송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로 인한 인수인의 책임)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21) 상개서.

22) 대법원, 사법연감, 2021년

2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3일).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이사·이사회·감사 관련 소송	제385조(해임)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389조(대표이사)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신주·사채 관련 소송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최사의 조직개편 관련 소송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2) 「자본시장법」²⁴⁾

[표2] 「자본시장법」 회사소송 규정

소송내용	자본시장법 조문
발행공시 관련 소송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법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통공시 관련 소송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공개매수 관련 소송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증권관련 집단 소송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소송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3일).

III.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이미 상사법원을 도입한 국가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도입례를 검토한다.

1. 미국

미국은 1993년에 뉴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1개 주에서 상사법원(Business Courts)을 도입하였다(표 3).²⁵⁾²⁶⁾ 뉴욕주는 전담 부서(Business Law Section)를 마련하였으며, 상사법 전문화를 시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역시 이러한 상사법원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주로 사법제도 역시 연방과 이원화하여 운영²⁷⁾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사법원은 바로 주의 사법제도에 속한다. 미국은 주별로 고유의 법제와 법원조직을 두고 있으며, 상사법원의 명칭, 조직 및 운영은 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사업에 관련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사건만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²⁸⁾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상사법원 도입 시 뉴욕주를 모델로 삼았다. 다음에서는 뉴욕주의 사례를 비롯하여, 미국 회사법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델라웨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3] 주별 상사법원 도입 연도

연도	주
1993	뉴욕, 일리노이
1995	노스캐롤라이나
1996	뉴저지
2000	펜실베이니아, 메사추세츠, 네바다
2001	로드아일랜드
2003	메릴랜드
2004	플로리다
2005	조지아
2006	오리건, 콜로라도

25) John F. Coyle, Business Courts and Interstate Competition, 53 Wm. & Mary L. Rev. 1915, 2012, p. 1918.

26) American Bar Association,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mmercial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American Bar Association, 2014,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publications/blt/2014/05/01_renck/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3일).

27)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 2020, 25-31면.

28) Coyle, op. cit., p. 1922.

2007	사우스캐롤라이나
2008	메인, 뉴햄프셔
2009	앨라배마, 오하이오
2010	델라웨어
2012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1) 도입 배경 : 뉴욕 주의 상사재판부(Commercial Division) 시범운영

현재 뉴욕주의 상사재판부는 뉴욕주 1심 법원 중 하나인 지방법원(Supreme Court)²⁹⁾ 소속의 재판부로서, 상사소송을 전담한다. 뉴욕주가 이처럼 전담재판부를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 소송 누적으로 인한 지연, 높은 비용 및 일관성 없는 사건 관리 등 기존 소송절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있었다.³⁰⁾ 이는 뉴욕주 법원을 통한 상사 분쟁 해결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고,³¹⁾ 이에 뉴욕 카운티(맨하튼)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1993년, 상사소송을 전담할 4개의 상사부(Commercial Part)를 민사 재판부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에 돌입하였다. 뉴욕주는 상사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타진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³²⁾ 구체적으로는 1992년 대비 1993년의 처리 건수가 35% 증가하였고, 일반 법관(Generalist Judge)에 비하여 상사부에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Specialist Judge)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³³⁾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11월에 뉴욕주의 상사 사건을 취급할 상사재판부(Commercial Division)가 먼로 카운티(현 제7구역)와 뉴욕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특별 재판부로서 개설되었다.³⁴⁾ 그 뒤로도 뉴욕주 법원이 상사재판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³⁵⁾을

29) STRUCTURE OF THE COURTS,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https://www.nycourts.gov/courts/structure.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30) Coyle, op. cit., p. 1923.

31) Bach, M. L., & Applebaum, L. (2004). A History of the Creation and Jurisdiction of Business Courts in the Last Decade. The Business Lawyer, 60(1), p. 152. <http://www.jstor.org/stable/40688264>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32) Commercial Division - NY Supreme Court: History,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http://www2.nycourts.gov/courts/comdiv/history.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33) Bach et al., op. cit., p. 153.

34) 두 카운티 지역법원에 상사재판부를 개설하기에 앞서,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상사재판부(Commercial Division)의 정식 설치를 뉴욕주에 건의하였고, 뉴욕주 법원은 해당 건의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TF를 구성하였는데, 해당 TF는 (1) 상사재판부를 설치 및 (2) 효율적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사건 관리 체계와 기술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뉴욕주 최고법관(Chief Judge)이 뉴욕주 상사재판부를 정식으로 설치하였다. [Commercial Division - NY Supreme Court: History, op. cit.].

35) 뉴욕주 법원은 2006년 상사법원 포커스그룹 보고서(Report to the Chief Judge on the Commercial Division Focus Groups)와 2012년 21세기 상사소송 대책위원회 보고서(The Chief Judge's Task Force on Commercial Litigation in the 21st Century: Report and Recommendation to the Chief Judge of the State of New York)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사재판부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bid.].

계속한 결과, 뉴욕의 상사재판부는 미국 내 상사법원의 주요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이와 같은 전문법원이나 재판부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처리 건수의 증가 외에 뉴욕 상사재판부가 거둔 성과로, 평균 소송 기간의 단축을 들 수 있다. 1993년의 상사부 시범운영 전인 1992년 계약 분쟁의 평균 처리 기간은 648일이었는데, 1998년에는 상사재판부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552일로 줄었고, 2000년에는 412일, 2002년에는 364일로 점차 감소하여, 10년간 총 44%의 단축률을 기록하였다.³⁶⁾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뉴욕주는 현재 11개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상사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담당 법관의 수도 29인으로 증가하였다.³⁷⁾³⁸⁾

2) 특징

(1) 뉴욕주

뉴욕주의 「상사재판부 규칙」은 복잡한 상사 분쟁의 비용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판정을 상사재판부의 지향점으로 한다.³⁹⁾ 상사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상사재판부의 특징으로, 소송의 초기 절차부터 법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사건 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법관은 해당 사건을 ADR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ADR의 활용은 「상사재판부 규칙」(뉴욕주 1심 법원 통일규칙 제202부 제202.70절)의 규칙 3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이 ADR 절차를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변호인이 요청할 수도 있다.⁴⁰⁾ 또한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 절차의 주재를, 상사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 법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⁴¹⁾ 뉴욕 카운티의 상사재판부는 자체적으로 ADR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2012년에 발표된 『21세기 상사소송 대책위원회 보고서』는 이러한 ADR의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뉴욕 카운티 상사재판부 사건을 5건 중 1건을 반드시 ADR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다.⁴²⁾ 실제

36) Bach et al., op. cit., p. 154.

37) Commercial Division - NY Supreme Court: History, op. cit.

38) 12JD - Civil Supreme, Bronx,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https://ww2.nycourts.gov/COURTS/12jd/BRONX/Civil/filingrules.shtml#CommercialDivision>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39) Section 202.70 Rules of the Commercia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Preamble.
<http://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40) Section 202.70, Rule 3(a).

41) Section 202.70, Rule 3(b).

42) Report and Recommendation to the Chief Judge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Chief Judge's Task Force on Commercial Litigation in the 21st Century, pp. 26-28.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courts/comdiv/PDFs/ChiefJudgesTaskForceOnCommercialLitigationInThe21stpdf.pdf>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3일).

뉴욕 카운티 상사재판부에서 2014년 7월 28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이를 시행하였고,⁴³⁾ 5건 중 1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상사재판부에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ADR 회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시범 사업은 종료되었다.⁴⁴⁾ 뉴욕 카운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상사재판부가 운영하는 ADR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상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최근 확대하기도 하였다.⁴⁵⁾

그 밖에, 상사재판부에 제소 가능한 사건의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1) 최저 쟁송 금액(Monetary Threshold)과 2) 사건의 상업성 등이다. 최저 쟁송 금액은 상사재판부가 있는 카운티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표4] 참고), 쟁송 금액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이자, 비용, 지출액,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사재판부 규칙」 제b항에서 상업적 사건 유형으로 계약이나 신탁의무 위반,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는 거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거래, 사업단체의 내부 문제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단체상사소송이나 대표소송, 주식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y)·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해산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저 쟁송 금액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제c항에서 열거하는 사건 유형은 최저 쟁송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상사재판부에서 다룰 수 없다.

[표4] 카운티별 최저 쟁송 금액

카운티 이름	금액
알바니	\$50,000
브롱스	\$75,000
제8 사법 구역	\$100,000
킹스	\$150,000
나소	\$200,000
뉴욕	\$500,000
오논다가	\$50,000
퀸즈	\$100,000
제7사법 구역	\$50,000
서포크	\$100,000
웨스트체스터	\$100,000

43) Commercial Division - New York County / Manhattan: ADR Overview,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http://ww2.nycourts.gov/courts/comdiv/ny/ADR_overview.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44) Administrative Order, United Court System First Judicial District Supreme Court, Civil Branch, January 28, 2016.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courts/comdiv/ny/PDFs/AO-ADR22016.pdf>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45) Commercial Division - New York County / Manhattan: ADR Overview, op. cit.

상사재판부의 절차는 「지방법원 및 카운티 법원 통일민사규칙」(뉴욕주 1심 법원 통일규칙 제202부)을 준용하되, 「상사재판부 규칙」(뉴욕주 1심 법원 통일규칙 제202부 제202.70절)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며, 사전 협의(Preliminary Conference)에 대하여는 같은 부 제202.12절에서 정하는 절차 대신 제202.70절의 규칙 7부터 규칙 15를 적용하고, 신청 절차(Motion Procedure)에 대하여는 제202.8절 대신 제202.70절의 규칙 16부터 규칙 24를 적용한다.⁴⁶⁾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및 카운티 법원 통일민사규칙」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경우 상사재판부에서 추가 요건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4,500 페이지를 초과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북마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사재판부는 모든 전자문서에 이를 요구하며, 북마크를 비롯하여 뉴욕주 법원의 전자문서시스템(NYSCE)에 있는 과거 사건의 인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이퍼링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⁴⁷⁾

(2) 델라웨어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모범적인 회사법으로 유명한 델라웨어는 그 명성에 걸맞게 상사 재판의 역사 또한 길다. 현재 델라웨어에서 상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그리고 일반법원(Superior Court)의 복합상사소송재판부(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이하 CCLD라고 함) 등 두 곳이다.⁴⁸⁾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헌법상 기관인 형평법원⁴⁹⁾은 모든 형평법상 문제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사건 대부분이 회사, 신탁, 유산 등에 관련된 사건이지만, 회사법상 문제가 아닌 다른 사건도 다룬다.⁵⁰⁾ 2003년에는 형평법원의 관할권 법률 개정⁵¹⁾에 따라, 1백만 달러 이상의 사업자 간 기술 분쟁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⁵²⁾ 형평법원의 절차적 특징으로는, 배심원 재판을 하지 않고⁵³⁾, 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법관 중 1인이 재판을 주재⁵⁴⁾하며, 민사사건만을

46) Section 202.70 (g).

47) Section 202.70, Rule 6.

48) State Court Structure Charts: Delaware, Court Statistics Project.

https://www.courtstatistics.org/state_court_structure_charts/delaware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49) 형평법원은 델라웨어 헌법에 설립 조항을 두고 있으며, 1792년 개원하였다. [Quillen, W.T. & Hanrahan, M. (1993) A Short History of the Court of Chancery. Court of Chancery.

<https://courts.delaware.gov/chancery/history.aspx>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0)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Chancery, Delaware Courts.

<https://courts.delaware.gov/chancery/jurisdiction.aspx>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1) The Delaware Code, Title 10, § 346. <http://delcode.delaware.gov/title10/c003/sc03/index.html#346>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2) Holland, R. J. (2017). Delaware Corporation Law: Judiciary, Executive, Legislature, Practitioners. The Business Lawyer, 72(4), p. 953. <https://www.jstor.org/stable/26419172>(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3) Judicial Officers, Delaware Courts. <https://courts.delaware.gov/chancery/judges.aspx>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취급⁵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뉴욕의 상사재판부와 같이 계약 분쟁 등 상사 사건은 형평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처리하였는데, 그러한 사건을 전담할 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에 CCLD가 출범하게 되었다.⁵⁶⁾

별도의 법원으로 존재하는 형평법원과 달리, CCLD는 델라웨어주 1심 법원인 Superior Court 소속 재판부로서 1심 법원장이 발하는 사무지시 제2010-3호로 설치되었다.⁵⁷⁾⁵⁸⁾ CCLD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으로는 1) 분쟁의 대상 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사건, 2) 독점적 법원 지정 합의나 그러한 합의에 따른 판결에 대한 사건 3) CCLD로 사건 배당이 적합하다고 법원장이 정하는 사건 등이며, 개인의 신체·정신적 피해보상, 저당 압류, 유치권 소송, 수용, 또는 개인이나 가족 등 지극히 사적 목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법원 지정 합의 관련 사건 등은 CCLD에서 다룰 수 없다.⁵⁹⁾ CCLD에서 다루는 사건은 CCLD 소속 법관(Panel Judge) 중 1인에게 배당되는데, 사건의 최종 처분까지 담당 법관이 계속하여 사건을 전담하며, 이는 해당 법관의 CCLD에서의 3년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⁶⁰⁾

2. 영국

1) 영국 상사법원 개관

영국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 속해 있으며, 국내·외의 복잡한 상사분야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국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해 절차가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1895년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사법원의 절차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에 목적을 두고 최대한 유연하게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국 내의 상사사건 외에도 국제적인 상사사건 또한 높은 비중

54) THE DELAWARE CONSTITUTION, ARTICLE IV. JUDICIARY, § 10.

<http://delcode.delaware.gov/constitution/constitution-05.html#TopOfPage>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5) RULES OF THE COURT OF CHANCERY OF THE STATE OF DELAWARE, Rule 2.

<https://courts.delaware.gov/rules/pdf/ChanceryRuleSet12-16-19.pdf>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6) Coyle, op. cit., pp. 1925-1926.

57)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https://courts.delaware.gov/superior/pdf/Administrative_Directive_2010-3.pdf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3일).

58) 그러한 이유로, CCLD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59) ADMINISTRATIVE DIRECTIVE NO. 2010-3, op. cit.

60) Ibid, 6(a).

으로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영국 상사법원의 특징으로 인해 영국 상사법원은 현재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 국제상사법원의 중요한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상사사건 당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분쟁해결지 및 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영국의 상사법원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법관의 판단하에 약식결정을 내릴 수 있고, 위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일의 빠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1970년 5월 29일에 제정된 「사법행정법 1970」 제3조 및 제4조⁶¹⁾에 따라 법원(court)의 지위로 격상되었는데,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이 법 제3조는 「대법원법 1981⁶²⁾(이 법의 제목은 「헌법개혁법2005」로 대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상급법원법 1981(Senior Courts Act 1981)」로 바뀜)」로 대체되었으며, 상사법원 법관의 중재 권한에 관한 제4조는 「중재법 1996」으로 대체되었고, 상사법원지침을 1986년 9월 최초 발간(현 지침은 제10차 개정판)되었다.

2) 영국상사법원 역사 및 도입 배경

영국의 상사법원은 1985년에 설립되었다.⁶³⁾ 도입 배경은 상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의 필요성이 런던 지역의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⁶⁴⁾ 햄블린(Hamblyn) 대법관의 상사법원 125주년 기념 강연에서⁶⁵⁾ 상사법원을 설치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1870년대의 영국은 당시 복잡한 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야 하고 있었다. 또한, 당대의 상업 종사자(Mercantile public)는 소송(litigation)보다는 중재(Arbitration)로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송이 소모적 논쟁에 치우친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법관의 상사 분쟁 전문성은 부족한 한편, 소송에 드는 큰 비용과 시간 대비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여, 상사재판부(Commercial List)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관의 보편성 확보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된 사법체제를 구축해 나가던 당시 19세기 말의 사법 개혁 방향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당시 영국 사법부의 수장(Lord Chief Justice, 이하 LCJ라고 함)⁶⁶⁾인 콜리지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콜리지를 이어 LCJ로 임명된 러셀이 상사재

61)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70, as enacted.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0/31/enacted>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62) Supreme Court Act 198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1/54/introduction/enacted>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63) Commercial Court: About Us, Courts and Tribunal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you-and-the-judiciary/going-to-court/high-court/queens-bench-division/courts-of-the-queens-bench-division/commercial-court/about-us/>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64) Ibid.

65) Lord Hamblen, The Commercial Court: Past, Present, and Future, 13 October 2020, Annual Combar Lecture 2020 (delivered virtually). <https://www.supremecourt.uk/docs/speech-201013.pdf>(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관부의 신설을 적극 주도하였고, 원래는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QBD 소속 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뒤, 1895년 2월 6일의 사건목록의 뒷면에 공고하여 상사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영국 사법제도 내에서 상사법원은, 고등법원(High Court)의 3개 부(Division) 중 하나인 Queen's Bench Division(QBD, 여왕좌부) 소속 전문법원 중 하나⁶⁷⁾로서 존재한다. 영국 고등법원(잉글랜드&웨일즈)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⁶⁸⁾ 고등법원의 3가지 부(Division)인 Queen's Bench Division(QBD), Chancery Division(ChD), Family Division로 나뉜다. Queen's Bench Division에서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1심 사건은 계약 관련 분쟁과 불법행위 사건이고, QBD에는 전문부로서의 의미가 있는 Commercial Court(통상재판부), Admiralty Court(해사재판부),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기술 및 건설재판부), Mercantile Court(상사재판부), Administrative Court(행정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ChD에서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신탁, 유언 등 다양한 재산권 사건을 다룬다.⁶⁹⁾

3) 조직 구성

현직 법관은 법원장 포함 13인 (2020년 10월 기준), 이 중 여성 2인(법원장 포함), 남성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⁰⁾⁷¹⁾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은 법관명부를 공유한다. 그 밖에,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은 지침 역시 공유하고 있으며,⁷²⁾ 퇴임 법관과 왕실자문변호사(Queen's Counsel, QC) 등이 Deputy Judge로 활동하고 있다.⁷³⁾⁷⁴⁾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상사법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eputy Judge가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상사법원은 다른 법원과는 달

66) 영국은 사법부의 수장(Lord Chief Justice, LCJ)과 대법원장(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을 별도의 직책으로 두고 있다. <https://www.judiciary.uk/about-the-judiciary/who-are-the-judiciary/judicial-roles/judges/lord-chief-justice/> (최종방문일: 2021.9.5.)

67) 김정환, 이수진, 장지용.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p. 23.

68) The 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 Courts and Tribunal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you-and-the-judiciary/going-to-court/high-court/>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69) 사법정책연구원. 각국의 사법제도. op. cit., p. 219.

70)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Including the Admiralty Court Report), Judicial Office, p. 8.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1/05/6.7302_Commercial-Courts-Annual-Report_Final_WEB.pdf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71) Commercial Court: Judges & clerks,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you-and-the-judiciary/going-to-court/high-court/queens-bench-division/courts-of-the-queens-bench-division/commercial-court/judges-clerks/>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72) The Commercial Court Guide, Edited by the Judges of the Commercial Court of England & Wales, 10th Ed., 2017.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2422/The_Commercial_Court_Guide_new_10th_Edition_07.09.17.pdf (최종방문일: 2021.8.23.).

73)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p. 63-64.

74) 김정환 외, 전게서, pp. 24-25.

리, 절차법관(Masters)⁷⁵⁾이 없고, 사건 청구의 접수, 검토 등 모든 과정을 법관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법관 외에, 법원 행정 사무를 맡는 직원과 각 법관에 배정된 서기(clerk)가 있어 전문성을 지원한다.⁷⁶⁾

그 밖에 영국 8개 지역에 지역 상사법원(Circuit Commercial Court)이 있는데, 이들 법원은 상사법원 소속이 아닌, 각 지역의 사업재산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 소속이다. 참고로, 예전 명칭은 상업법원(Mercantile Court)으로 되어 있다.⁷⁷⁾ 또한, 영국은 금융 사건만을 다루는 특별 재판부인 금융재판부(The Financial List)도 두고 있다. 금융재판부는 주요 금융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2015년 고등법원 내에 신설하였다. 여기서 주요 금융 사건이란 5천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건이나 영국 국내의 금융 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⁷⁸⁾ QBD 소속인 상사법원의 법관 7인과 Chancery Division 소속 법관 8인 등 총 1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2019-2020).⁷⁹⁾ 법관의 명단과 정원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상사법원 법관 5인과 Chancery Division 법관 7인 등 총 12인의 법관이 있었다.⁸⁰⁾ 이에 영국의 상사법원 청구 건수는 2019년부터 2020년 35건으로 지난해(2018-2019) 21건 대비 66% 상승하였으며,⁸¹⁾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의 청구 건수 동향은 25건(2017-2018), 21건(2018-2019), 35건(2019-2020)으로 조사된다.⁸²⁾

4) 관할 사건

「민사소송규칙」 제58부 제58.1조 제2항에 상사 청구(Commercial Claims)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교역과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상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건의 유형으로 사업 계약, 물품의 수출입, 육상·해상·항공·배관 운송, 석유 등 천연자원의 개발, 보험, 금융, 시장과 거래소 운영, 상품 매매, 조선(造船), 사업상의 대리, 중재 등이

75) 절차법관(master)은 소제기 단계부터 사실심 법관에 의한 심리 전 단계까지의 모든 절차적 사항을 관할하는 절차 전담 법관이다. 사실심 법관에 의한 심리 및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 절차 법관은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관할한다. 절차법관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 을 갖춘 자 중에서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쳐 여왕이 임명한다(김정환 외, 전거서, p. 35).

76)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p. 72-73.

77) The Circuit Commercial Courts,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you-and-the-judiciary/going-to-court/high-court/queens-bench-division/courts-of-the-queens-bench-division/circuit-commercial-courts/work/>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78)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 39

79) Ibid.

80)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8-2019 (Including the Admiralty Court Report), Judicial Office, p. 12.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1/05/6.6318_Commercial-Courts-Annual-Report_WEB1.pdf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3일).

81)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 40.

82) Ibid.

명시되어 있다.⁸³⁾

영국 상사법원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사건 통계를 공개한다. 상사법원에 청구된 사건 중 국제 분쟁 사건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⁸⁴⁾ 2019년부터 2020년도에 접수된 사건 중 74%가 국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거에도 이 비율이 75% 안팎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⁸⁵⁾ 그 수를 보면, 연간 800건 이상의 사건이 상사법원에 접수되고 있다.⁸⁶⁾ 2019년부터 2020년에 신규 청구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도(2018-2019)의 807건 대비 6.6% 증가하였다.⁸⁷⁾ 사건 유형별로는 계약과 관련한 일반소송의 건수가 224건으로 제일 많았다.⁸⁸⁾ 사건별 청구 액수는 보통 5백만 파운드 이상이며, 10억 파운드 이상인 사건 청구도 다수 존재한다.⁸⁹⁾ 중재 관련 사건의 비중은 약 25%로, 중재 관련 사건으로는 1) 중재 관련 사건에 대한 금지 신청(가처분), 2) 중재 집행 신청, 3) 영국의 중재법 1996 제67조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이유로 제기하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4) 같은 법 제69조에 근거하여 법리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 5) 같은 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실제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제기하는 불복 등이 있다.⁹⁰⁾

심리는 일정이 잡힌 총 1,476건 중 실제로 1,013건이 2019년부터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실제 건수 동향을 보면 991건(2017-2018), 998건(2018-2019) 등으로 조금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⁹¹⁾ 또한 상사법원은 재판뿐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는데,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이라도 그 전에 합의되기도 한다. 2019년부터 2020년에 총 142건의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그 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 수는 4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만 66.2%가 사전에 합의되었다.⁹²⁾ 이러한 합의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는데, 소송절차 초기에 당사자의 쟁점 명시 의무화하였고, 사건관리회합(CMC)과 증거공개, 증인진술서 교환,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당사자 입장을 평가하는 한편, ADR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7부터 2020까지 3년간 상사법원의 변론 절차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해사법원이나 런던 지역 상사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⁹³⁾ 동시에 상사법원이 연간 내리는 판결 건수의 최근 3년 동향을 보면, 156건에서 173건, 2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83) Civil Procedure Rules, Part 58 Commercial Court.

<http://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art58>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84) Commercial Court: About Us, op. cit.

85)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p. 18-19.

86) Commercial Court: About Us, op. cit.

87)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 20.

88) Ibid., p. 21.

89) Ibid., p. 10.

90) Ibid., p. 11.

91) Ibid., p. 22.

92) Ibid. pp. 24-25.

93) Ibid., p. 37.

다.⁹⁴⁾ 이와 같이 상사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는 약식재판제도(Shorter Trials Scheme), 유동재판제도(Flexible Trials Scheme), 및 법관의 신속 처리 명령 등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기에 가능하다.⁹⁵⁾ 영국은 법관이 신속 처리 명령을 내릴 때 사건의 객관적 위급성, 재판부의 상황, 신청인 귀책으로 인한 지연 등 이력,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주요 문서

상사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최초의 법률 규정은 1970년 5월 29일 자의 「사법행정법 1970」 제3조 및 제4조에 두고 있었으나, 이후 다른 법률로⁹⁶⁾ 대체 또는 폐지되어, 현재는 「상급법원법 1981」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중재법 1996」 제93조 및 제107조, 제93조에는 상사법원 법관이 중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법원재판소(법관 및 직원의 역할)법 2018」로 개정되어,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법관의 범위가 고등법원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상사법원의 사무와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민사소송규칙」 제58부⁹⁷⁾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대한 세부 업무 지침으로서 「사무지침 58 - 상사법원」⁹⁸⁾을 비롯하여 상사법원 지침⁹⁹⁾등 역시 두고 있다. 앞의 상사법원 지침 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새로 지침을 발표하거나, 법관이 공고하는 회람 문서도 지침으로 삼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문서로는 전자 소장 작성 요건에 대한 지침¹⁰⁰⁾과 규정 분량을 초과하는 서면 증언 관련 지침¹⁰¹⁾ 등이 있는데, 특히 후자의 지침은 증언증거실무단(Witness Evidence Working Group)의 보고서¹⁰²⁾에 기초하여 발표되었다. 2021년 4월에는 실무단의 이행보고서에 기초하여 영국 「민사소송규

94) Ibid., p. 38.

95) Ibid., p. 46.

96) 그러한 사례로 「헌법개혁법 2005」가 있다.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5/4/contents>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97) Civil Procedure Rules, Part 58, op. cit.

98) PRACTICE DIRECTION 58 - COMMERCIAL COURT.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art58/pd_part58(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99) The Commercial Court Guide, op. cit.

100) Electronic filing of applications to be dealt with without a hearing,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publications/electronic-filing-of-applications-to-be-dealt-with-without-a-hearing/>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101) WITNESS EVIDENCE - LENGTHY TRIAL STATEMENTS: Notice from the Judge in Charge to Users of the Commercial Court,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0/03/Witness-Evidence-Length-Trial-Statements-1-1.pdf>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102) FACTUAL WITNESS EVIDENCE IN TRIALS BEFORE THE BUSINESS & PROPERTY COURTS, REPORT OF THE WITNESS EVIDENCE WORKING GROUP.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2/Witness-statement-working-group-Final-Report-1-1.pdf>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칙」 제57부에 사무지침 57AC를 신설하기도 하였다.¹⁰³⁾¹⁰⁴⁾ 더욱, 상사소송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및 심리 예상 소요시간 관련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¹⁰⁵⁾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변호인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Pro Bono)가 상사법원으로도 확대되어,¹⁰⁶⁾ 상사법원 및 런던상사법원 무료 법률 서비스 규약¹⁰⁷⁾을 비롯하여 상사법원 및 런던상사법원 무료 법률 서비스 설명 자료¹⁰⁸⁾ 등도 구비하고 있다.

6) 기타 특징

그 밖에 영국 상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으로, 최신 기술의 적극 활용과 이용자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영국의 전자소송 사이트인 CE File를 통하여 문서 제출과 사건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의 최근 3년 판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기업을 토하였는데, 상사법원은 그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원격으로 진행하는 심리의 적극 활용을 들었다.¹⁰⁹⁾ 2020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심리(Hearing)는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참석자 수 증가로 이어져, 사법의 공개성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상사법원은 보았다. 상사법원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원격 진행 선호도가 높았으며, 대면 심리가 가능한 때에도 대부분 원격 심리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또한 돋보인다. 상사법원과 런던 지역 상사법원 각각 이용자 그룹을 조직하고 정기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하여 상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주제로 변호사, 유관 단체의 대표, 상사법원의 법관 간에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도모하고 있다.¹¹⁰⁾

103)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 51.

104) PRACTICE DIRECTION 57AC - TRIAL WITNESS STATEMENTS IN TH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http://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art-57a-business-and-property-courts/practice-direction-57ac-trial-witness-statements-in-the-business-and-property-courts> (최종방문일 2021년 9월 20일).

105) Notice from the Judges in Charge of the Commercial Court and the London Circuit Commercial Court,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28 September 2020.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0/10/Time-estimates-Notice-2020-1.pdf>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0일).

106) Pro bono legal work being extended to the Commercial Court,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announcements/pro-bono-legal-work-being-extended-to-the-commercial-court/>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0일).

107) THE COMMERCIAL COURT AND LONDON CIRCUIT COMMERCIAL COURT PRO BONO SCHEME: SCHEME PROTOCOL, Advocate.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0/07/Scheme-Protocol-1.pdf> (최종방문일: 2021.8.26.).

108) The Commercial Court and London Circuit Commercial Court Pro Bono Scheme: EXPLANATORY NOTE FOR PERSONS WITHOUT REPRESENTATION,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0/07/Explanatory-Note-Final-Version-1.pdf>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0일).

109) The Commercial Court Report 2019-2020, op. cit., pp. 59-61.

3. 네덜란드

1) 도입 배경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상사법원(Netherlands Commercial Court, 이하 NCC라고 함) 설립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오다가, 2015년 상사법원설립을 위한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거친 후 2017년에 NCC 법안이 의회 하원에서 발의되면서 구체화 되었으며, NCC는 201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2) NCC 특징

NCC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네덜란드의 법제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NCC의 1) 조직, 2) 법원(法源), 3) 인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NCC는 별도의 특별 법원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네덜란드 사법 체계에 속하는 한 조직으로 존재한다.¹¹¹⁾ NCC는 크게 1심 법원과 2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심 법원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소속이며, 2심 법원은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소속이다. NCC 1심 재판은 NCC 지방법원과 NCC 약식소송 법원에서 담당하며, NCC 2심 재판은 NCC 항소법원에서 진행한다. NC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네덜란드의 대법원으로 할 수 있다.¹¹²⁾ 참고로 NCC 지방법원과 NCC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3인 합의부로 구성하며¹¹³⁾ 약식소송은 법관 1인의 단독재판부로¹¹⁴⁾ 진행한다.

둘째, NCC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절차법을 토대로 한다. NCC의 주요 법원으로는 「네덜란드 상사법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¹¹⁵⁾, 「민사소송법」¹¹⁶⁾, 「네덜란드 상사법원 소송규칙」¹¹⁷⁾ 등이 있다. 이 중 「네덜란드 상사법원 소송규칙」 제1.2조 제1항(1.2.1.)은 NCC의 소송절차는 네덜란드의 절차법, 특히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

110) Ibid., pp. 67-68.

111) Key features,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key-features-NCC.aspx> (최종접속일: 2021.10.20.).

112) About the NCC,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who-are-we.aspx> (최종접속일: 2021.10.20.).

113) Jeroen A. van der Weide, The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Ncc): It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79 IUS Gentium 81 (2020), p. 86.

114)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s of the Amsterdam District Court (NCC District Court) and the Amsterdam Court of Appeal (NCC Court of Appeal) 2nd Edition, Article 3.5.

115) van der Weide, op. cit., p. 86.

116)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s of the Amsterdam District Court (NCC District Court) and the Amsterdam Court of Appeal (NCC Court of Appeal) 2nd Edition, Article 1.2.

117) NCC Rules,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rules.aspx> (최종접속일: 2021.10.20.).

당 규칙의 내용도 대부분 네덜란드의 「민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네덜란드 상사법원 소송규칙」은 증거 규칙에 대한 명문 규정도 두고 있다.¹¹⁸⁾ 본래 네덜란드의 절차법은 그 특징으로 효율성과 실용성, 비용절감성 등의 장점이 있는데, 위 규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사법원 소송에 사용되는 요소와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세계변호사협회, 이하 IBA라고 함) 국제중재 증거 규칙의 요소 역시 도입하여, 민사법과 보통법상의 절차를 적절히 수용했다는 평가가 있다.¹¹⁹⁾

셋째, NCC가 자국의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점은 NCC의 인력 구성과 변호인에 대한 규칙에서도 드러난다. NCC의 법관은 1심에 6인, 그리고 2심에 4인 등 총 10인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관 모두 네덜란드 법관이다.¹²⁰⁾ 법관을 지원하는 3인의 Law Clerk과 법원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2인의 Administrative Clerk 역시 모두 네덜란드인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네덜란드 변호사여야 한다.¹²¹⁾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의 예로는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 말하는 약식소송 등이 있다.¹²²⁾ 또한, 「변호사법」상 방문 변호사(Visiting Lawyer)로 불리는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 국가, 스위스 출신의 변호사 역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의 개입만이 허용된다.¹²³⁾ NCC는 그 이름에 국제라는 명칭을 두지 않지만, 관할하는 사건은 국제 사건이어야 하며, 판결을 비롯한 모든 소송절차와 문서는 영어로 이루어진다.¹²⁴⁾ 네덜란드는 법정의 공식 언어에 대한 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네덜란드어로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¹²⁵⁾ 따라서,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NCC가 향후 어떠한 선례를 남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관 모두 네덜란드인이기 때문에, 법관 선정에 있어서 영어 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 변호사가 참고하도록 네덜란드어-영어 소송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다.¹²⁶⁾

118)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s of the Amsterdam District Court (NCC District Court) and the Amsterdam Court of Appeal (NCC Court of Appeal) 2nd Edition, Section 8.

119) van der Weide, op. cit., pp. 96-97.

120) 네덜란드 상사법원 법관 및 직원.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judges-and-Staff.aspx> (최종접속일: 2021.10.20.).

121)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s of the Amsterdam District Court (NCC District Court) and the Amsterdam Court of Appeal (NCC Court of Appeal) 2nd Edition, Article 3.1.

122) Ibid., ANNEX I: Explanatory notes to these rules of procedure.

123) Ibid., Article 3.1.

124) Ibid., Article 2.1.

125) van der Weide, op. cit., pp. 102-103.

126) NCC Rules, op. cit.

3) 당사자가 자율성이 있는 민사 또는 상사 사건

NCC의 관할 사건은 국제성 외에도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NCC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¹²⁷⁾ 첫째, 당사자가 자율성이 있는 민사 또는 상사 사건 둘째, 국제적 사건 셋째, 당사자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을 재판지로 지정하였거나 그 밖의 이유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이 심리 권한을 가지는 사건, 넷째 당사자가 소송을 네덜란드 상사법원에서 영어로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사건 등이다.

국제적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을 재판지로 지정하였거나 그 밖의 이유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이 심리 권한을 가지는 사건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네덜란드 상사법원에서 영어로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사건인데, 민사·상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덜란드의 1심 법원인 Subdistrict Court 관할 사건은 NCC에서 심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건으로는 사건 금액이 25,000 유로 이하인 사건이나 소비자 분쟁, 임대차 분쟁, 할부 구매, 대리 행위, 노사 문제 등이 포함된다.¹²⁸⁾ 또한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기업재판부, 헤이그 지방법원 특허재판부, 로테르담 지방법원 해사재판부 등의 법원이 독점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도 심리할 수 없다.¹²⁹⁾ 동시에, NCC의 관할 심사 시, 국제성을 판단할 때, Brussels I Regulation[유럽연합 규정 제1215/2012호]과 Hague Convention on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s(재판지 선택 합의에 관한 헤이그 협정) 또한 근거하여 판단하기도 한다.¹³⁰⁾ 2019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NCC가 판결한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2건, 2020년에는 6건으로 폭증하였다가 2021년은 10월 현재 2건이다.¹³¹⁾

IV. 상사법원 도입 방안 및 고려사항

1. 우리나라 회사소송제도의 문제점

국내 회사법상의 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사소송 절차의 간소화, 변호사, 법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을 촉진하는 절차법상의 검토도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상사비송

127)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s of the Amsterdam District Court (NCC District Court) and the Amsterdam Court of Appeal (NCC Court of Appeal) 2nd Edition, Article 1.3.

128) van der Weide, op. cit., p. 87.

129) Ibid.

130) Ibid.

131) 네덜란드 상사법원 판결 목록.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Pages/judgments.aspx>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20일)

사건의 소송화, 법원의 인력 부족과 법원의 상사소송 전문성 부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성 및 해결책을 모색한다.

1) 상사비송 사건의 소송화 경향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그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기간이 늘어날수록 도산 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소송보다는 중재나 비송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 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¹³²⁾ 이에 많은 기업들이 소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수요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상사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의 소송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송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사건을 형식적으로만 비송절차로 처리하는 데 따른 절차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¹³³⁾

2) 상사소송 수행 인력의 부족과 상사소송 전문성 부재의 문제

현재 국내 상사소송에 관한 문제점은 상사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 모색, 국제화 시대에 맞는 사법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

국내의 상사소송의 경우 그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상사 사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부재하여 판결이 전문적이지 못하며, 민사 법리에 치우친 재판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실정이다. 현재 상사 분쟁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판결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형평과 정의의 훼손이라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앞 각주¹³⁴⁾에서 논의한 코어비트 사건에서 알 수 있듯(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판결) 사법부의 상사 법리 이해의 부족, 회사자료의 판독 미흡, 사외이사의 책임, 상법의 구체적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사법원을 도입을 고려하고, 나아가 선진적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과 영국의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법제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32) NEWSIS20, "발전 5사, 분쟁 해결에 미적... 소송 길어져 상대업체 도산위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1067&cID=10401&pID=10400, 2021년 10월 12일 기사, (최종방문일 2021년, 10월 13일)

133) 강동욱·박성민, 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2013, 27면.

134) 각주 6번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분쟁을 제기할 때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는 예도 적지 않다.¹³⁵⁾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기업에 맞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법 정의가 멀게 느낀다거나, 미국 법원에 가서 원고에 유리한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판사 개인이 아닌 12명의 배심원이 판결에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기도 한다.¹³⁶⁾

3) 상사소송 실태조사의 부재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과 회사법이 중첩되는 영역이다. 회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및 회사소송을 포함한 상사소송 도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부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특히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간된 국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결과, 국내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회사소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사소송의 통계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상사소송은 민사소송에 포함되어 집계되고 있었으나, 정확한 비율과 수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상사비송사건의 경우는 연간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었다. 이에 상사법원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2.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을 통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전략

미국, 뉴욕 카운티(맨하튼)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1993년, 상사소송을 전담할 4개의 상사부(Commercial Part)를 민사 재판부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적극 도입하였다. 우리도 이처럼 국내 상사 전담재판부의 설치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영국의 상사법원 도입은 상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해 절차가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상사

135) 심재훈, 왜 한국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파이낸션 뉴스, 2020

<https://www.fnnews.com/news/202012091732060530>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18일).

136) 이에 구체적인 사례는 2020년 10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가 우리나라 회사들 간의 분쟁인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사건을 담당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의 주도권과 직결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 법원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낯설고 고비용이 드는 미국 법원 또는 ITC로 가는지와 원고와 피고가 전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서의 소송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심재훈, 왜 한국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파이낸션 뉴스, 2020 <https://www.fnnews.com/news/202012091732060530>,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18일).

사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외에, 법원 행정 사무를 맡는 직원과 각 법관에 배정된 서기가 있어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도 상사법원 도입에 있어, 전문인력의 증원과 기존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유연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관리를 설계할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사법적 전문성(법관의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상사법원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추진사례로 국내 특허법원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국내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재판에 관하여 아시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¹³⁷⁾ 이를 통해 국내 특허법원은 특허 출원 분야에서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¹³⁸⁾ 또한 대법원 사법 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한국의 국가 경제 규모 등에 걸맞은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여, 대법원은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중심법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³⁹⁾ 이러한 특허법원의 선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재판 분야의 전문성, 신속성 및 공정성 등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 상사소송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 상사법원이 아시아의 중심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사 분야에서 전문법원 도입 시, 예측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사법 서비스를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제공하며, 그러한 이미지를 사법 수요자들에게 심어 준다면 국제무대에서의 신뢰성도 제고되어 소송 분야에 관한 국가 주권을 방어하고 확대하는데 보다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 혁신

국내 경제시장의 성장, 변호사 인력 시장의 충분한 공급과 전문화로 사법 서비스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그만큼 사법부의 전문성·효율성·신속성 또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는 국내 사법 분야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 사상소송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강화와 혁신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법의 국민 보호 역할을 향상시킬 것이다.

137) 법원행정처, 2021년 사법연감, 40면.

138) 상계자료집.

139) 상계자료집, 36면.

4. 구체적 사전 조사와 설립 근거 마련

국내 상사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상사법원의 적정 사건을 확보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상사법원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도 관련이 있다. 국가, 국민, 기업 상호입장이 다를 수 있고, 관련 행정부처 사이에도 각기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면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상사법원 수립 전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로 충분히 도입의 당위성을 검증하고, 네덜란드처럼 전문 컨설팅 그룹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상사법원의 조직과 심판권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사법원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 등을 정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법률의 개정을 위해 우선 상사법원의 설립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국의 뉴욕주와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요를 예측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사소송을 중심으로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간된 국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보고서를 수집·분석하였지만, 국내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었으며, 이는 국내의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회사소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사소송의 통계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사소송에 관한 연간 통계는 민사소송에 포함되어 집계되고 있었다. 다만 상사비송사건의 경우는 통계자료가 산출·관리되고 있었다.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소송의 절차, 법리의 구성, 실체적 권리관계의 복잡성 등에서 법리 구조 체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사소송에 관한 소송법상의 개별화된 절차와 이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국민이 소송 누적으로 인한 지연, 둘째, 높은 비용 및 일관성 없는 사건 관리 등 기존 소송절차와 판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은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사소송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소송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사법원 도입과 관련한 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기존의 소송 법리·회사 법리·국제적 이슈나 동향을 반영하고, 국내 상사소송의 특성 및 당사자 권

리보호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상사법원 제도를 개관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실행하여, 도입례를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상사법원 전담재판부를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 소송 누적으로 인한 지연, 높은 비용 및 일관성 없는 사건 관리 등 기존 소송절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있었다. 미국은 1993년, 상사소송을 상사부 민사 재판부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에 도입한 결과, 상사부의 시범운영을 통한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11월에 뉴욕주의 상사 사건을 취급할 상사재판부గా 먼로 카운티와 뉴욕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특별 재판부로서 개설되었는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영국의 경우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해 절차가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1895년 설립되었다. 영국은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외에, 법원 행정 사무를 맡는 직원과 각 법관에 배정된 서기가 있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2015년 상사법원설립을 위한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거친 후 2017년에 NCC 법안이 의회 하원에서 발의되면서 구체화하였으며, NCC는 201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관할하는 사건은 국제 사건이어야 하며, 판결을 비롯한 모든 소송절차와 문서는 영어로 이루어지므로 국제상사시장 포섭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사법원 도입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사비송 사건의 소송화 경향을 지양하며, 인력 부족현상, 상사소송 전문성과 상사소송 실태조사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위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상사법원 도입 입법배경을 연구한 후,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였다.

향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상사법원이 경쟁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상사법원의 세계 상사법원으로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정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 청사진을 바라며, 회사소송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상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20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남진권 외 7,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대한상사중재원, 200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2012.
이완근, 상사중재비용 회수와 그 문제점, 동아법학, 2010.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4.

대한상사중재원, 2020년 클레임 통계, 2020.
대법원, 사법연감, 2021.

2. 해외문헌

American Bar Association,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mmercial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American Bar Association. 2014.
Administrative Order, United Court System First Judicial District Supreme Court, Civil Branch, January 28, 2016.
Bach, M. L., & Applebaum, L. 2004.
The Commercial Court Guide, Edited by the Judges of the Commercial Court of England & Wales, 10th Ed., 2017.
Holland, R. J. Delaware Corporation Law: Judiciary, Executive, Legislature, Practitioners. The Business Lawyer, 72(4), 2017.
Lord Hamblen, The Commercial Court: Past, Present, and Future, 13 October 2020, Annual Combar Lecture 2020.
Notice from the Judges in Charge of the Commercial Court and the London Circuit Commercial Court,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28 September 2020.
John F. Coyle, Business Courts and Interstate Competition, 53 Wm. & Mary L. Rev. 1915, 2012, p. 1918.
Report and Recommendation to the Chief Judge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Chief Judge's Task Force on Commercial Litigation in the 21st Century,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ommercial Courts in Korea

Ko, Eun-Jung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commercial court with a focus on corporate litigation. The specific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mmercial court, an example of its introduction is presented focusing on corporate litigation.

This study is to condu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courts focusing on stock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re becoming a reality through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tc., and the concrete realization of ESG is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claims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Company-related litigation is an area where civil litigation and company law overlap, but systematic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litigation including company litigation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omestic research reports, papers, and policy reports published from 2000 to September 2021, there is no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courts in Korea. was not confirmed, and it was included in civil litigation and counted, but only in the case of non-commercial litigation cases, annual statistical data were calculated. In this situ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direct research method with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as the main axis.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are selected as the countries lea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nd after examining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courts in those countri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specific details of the operation are reviewed.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manpower shortage, lack of

expertise, and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law in Korea's commercial litigation, and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ized commercial court and a plan for its introduction.

Key Words : Introduction of Commercial Court, Commercial Court, Specialization of Commercial Court, Commercial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